

[별표 2] <신설 2011.8.5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제2항제1호	300만 원
나.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제2항제1호	500만 원
다.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한 경우	법 제35조제2항제1호	800만 원
라.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5조제2항제2호	500만 원